

2024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특수조건

1. 일반조건

가. 보험계약기간 : 2024. 4. 1.(월) 00:00 ~ 2025. 4. 1.(화) 00:00 (1년간)

나. 보험가입대상 및 인원: 36,726명(신입생 별도)

(단위: 명)

구분		명수
재학생 및 연구생 등	재학생	28,127
	연구생	6,357
	국내교환학생	703
	국제교환학생	899
	국제방문학생	36
	특별수강생	48
	국제하계강좌수강생	556
소계		36,726
신입생 OT기간	신입생	6,887
계		43,613

※신입생 별도 [O/T기간, 예비대학 행사 등]: 6,887명(학사 3,400명, 대학원생 3,487명)

※ 대상자 및 인원수는 학생 재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재학(연구생 등록)중인 학생은 보험 급여 대상임

2. 담보내역 및 보상한도액

(단위: 천원)

담보위험	산출기초	구분	보상 한도액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담보(국내)	재학생 및 연구생 등 (36,726명)	대인 배상	350,000	3,500,000	100
		대물 배상		20,000	100
구내·외 치료비 담보(국내)	상 동		2,000	2,000	
신입생 학교 행사 중 담보 (O/T기간 5일, 국내)	신입생 (6,887명)	사망, 후유장해	200,000	200,000	
		신입생 치료비	2,000	2,000	

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

- 1)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및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 등을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로써 대인배상은 1사고당 최고 35억원, 1인당 최고 3억 5천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 하며, 대물배상은 1사고당 최고 2천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함.
- 2) 지급제한(면책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원자핵물질 또는 방사능 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나. 구내·외 치료비

- 1) 피보험자의 학생이 학교 활동 중 학교 내·외에서 입은 신체장해로 인한 치료비에 한해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학교 측에 책임이 없는 경우의 사고이어야 하고, 학생끼리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님.
- 2) 1사고당 최고 2백만원,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 함.
- 3) 지급제한(면책사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원자핵물질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피보험자와 피 교육생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로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 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
 - 사고일로부터 1년 후에 생긴 치료비

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5일) 중 상해, 사망·후유 장애 등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행사 중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 전액 지급,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장애 지급율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되, 사망·후유장애는 1사고 당 최고 2억원, 1인당 최고 2억원까지 배상 가능해야 하며, 치료비는 1사고 당 최고 2백만원,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배상 가능해야 함